|  |  |  |
| --- | --- | --- |
| **최고인민법원의 소비민사공익소송 사건 심리의 몇가지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  법석[2016]10호  <최고인민법원의 소비민사공익소송 사건 심리의 몇가지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이 2016년 2월 1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677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  2016년 4월 24일  소비 민사공익소송 사건을 정확하게 심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침권책임법>,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등 법률규정을 근거로 심판 실천과 결부시켜 이 해석을 제정한다.  제1조 중국소비자협회 및 성·자치구·직할시에 설립된 소비자협회가 경영자의 불특정 다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거나 소비자의 인신·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공공이익 침해 행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비민사공익소송은 이 해석을 적용받는다.  법률규정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사회조직이 제기하는 소비민사공익소송은 이 해석을 적용받는다.  제2조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 소비자권익보호법 제47조 규정을 적용한다.  (1)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존재하는 결함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당한 경우;  (2)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소비자의 인신·재산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성실한 설명과 명확한 경고가 이뤄지지 아니하였거나 정확한 상품 사용 방법 또는 서비스 이용 방법과 위험 발생 예방 방법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성능, 용도, 유효기한 등 정보에 대하여 허위홍보 또는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홍보를 한 경우;  (3)호텔, 백화점, 외식점, 은행, 공항, 정류소, 항구, 극장, 관광지, 유흥업소 등 경영장소에 소비자의 인신·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4)약관조항, 통보문, 성명문, 매장공지 등 방식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경영자의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거나 소비자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등 소비자에게 불공평, 불합리한 규정을 정한 경우;  (5)불특정 다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거나 소비자의 인신·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공공이익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  제3조 소비민사공익소송 사건의 관할은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석> 제285조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고급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거쳐 해당 관할지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관할지역 내의 일부 중급인민법원을 소비민사공익소송 제1심 사건 접수법원으로 확정할 수 있다.  제4조 소비민사공익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 제121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기소장 및 피고인수와 맞물리는 부본; 2. 피고의 행위가 불특정 다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거나 소비자의 인신·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공공이익을 침해한 초보적 증거; 3. 소비자조직이 기소 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권익보호법 제37조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성 직책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5조 인민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소송청구가 사회공공이익을 보호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고에게 소송청구를 변경하거나 침해 중지 등 소송청구를 증가할 것을 소명할 수 있다.  제6조 인민법원은 소비민사공익소송 사건을 접수한 후 사건 접수 상황을 공고하여야 하며 입건일로부터 10일 내에 서면으로 관련 행정주관부서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 인민법원이 소비민사공익소송 사건을 접수한 후 법에 의거하여 소송 제기가 가능한 기타 기관 또는 사회조직은 제1심 개정(開庭) 전에 인민법원에 소송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소송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공동원고로 추가하며; 기한이 경과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소비민사공익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기관 또는 사회조직은 민사소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 인민법원이 소비민사공익소송 사건을 접수한 후 동일 권리침해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소비자가 소송 참가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에게 민사소송법 제11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권리를 주장하여야 함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소비민사공익소송 사건이 접수된 후에 동일 권리침해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소비자가 본인이 민사소송법 제11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기한 소송의 중지(中止)를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제11조 소비민사공익소송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반소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원고가 소송 중에 원고 측에 불리한 사실을 인정한 것에 대하여 인민법원이 사회공공이익에 손해가 초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확인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원고가 소비민사공익소송 사건에서 피고의 침해 중지, 방해 배제, 위험 제거, 사과 등 민사책임 부담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청구를 지지할 수 있다.  경영자가 약관조항 또는 통보문, 성명문, 매장공지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 또는 제한거나 경영자의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거나 소비자의 책임을 가중시킨 것에 대하여 원고가 소비자에게 불공평,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하고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할 수 있다.  제14조 소비민사공익소송 사건의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후 인민법원은 10일 내에 서면으로 관련 행정주관부서에 고지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사법건의를 발송할 수 있다.  제15조 소비민사공익소송 사건의 판결이 법률효력을 발생한 후 법에 의거하여 원고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기타 기관 또는 사회조직이 동일 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별도의 소비민사공익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동일 권리침해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소비자가 민사소송법 제11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기한 소송의 원고, 피고 모두 소비민사공익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해 인정된 사실에 대하여 증거를 제출하여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단, 당사자가 당해 사실에 대하여 이의가 있고 당해 사실인정을 뒤엎기에 충분한 반대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소비민사공익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해 경영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된 상태에서 동일 권리침해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소비자가 민사소송법 제11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가 당해 불법행위 인정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할 수 있다. 단, 피고가 당해 불법행위 인정을 뒤엎기에 충분한 반대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피고가 피고 측에 유리한 인정의 직접적인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지 아니하며 피고는 여전히 해당 증명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 원고가 침해 중지, 방해 배제, 위험 제거를 위한 합리적인 예방, 처리 조치를 취하는데 발생한 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청구를 지지할 수 있다.  제18조 원고와 그 소송대리인의 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증거수집 과정에서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 감정비용, 합리적인 변호사 대리비용에 대하여 인민법원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지지할 수 있다.  제19조 이 해석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해석이 시행된 후 인민법원이 접수하는 제1심 사건은 본 해석을 적용받는다.  이 해석이 시행되기 전에 인민법원이 이미 접수하였고 시행된 후 아직 심리가 종결되지 아니한 제1심, 제2심 사건과 이 해석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심리가 종료되었지만 시행된 후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거나 심판감독절차에 따라 재심이 결정된 사건은 이 해석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  |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消费民事公益诉讼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法释〔2016〕10号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消费民事公益诉讼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已于2016年2月1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677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16年5月1日起施行。  最高人民法院  2016年4月24日  为正确审理消费民事公益诉讼案件，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等法律规定，结合审判实践，制定本解释。  **第一条** 中国消费者协会以及在省、自治区、直辖市设立的消费者协会，对经营者侵害众多不特定消费者合法权益或者具有危及消费者人身、财产安全危险等损害社会公共利益的行为提起消费民事公益诉讼的，适用本解释。  法律规定或者全国人大及其常委会授权的机关和社会组织提起的消费民事公益诉讼，适用本解释。  **第二条** 经营者提供的商品或者服务具有下列情形之一的，适用消费者权益保护法第四十七条规定：  （一）提供的商品或者服务存在缺陷，侵害众多不特定消费者合法权益的；  （二）提供的商品或者服务可能危及消费者人身、财产安全，未作出真实的说明和明确的警示，未标明正确使用商品或者接受服务的方法以及防止危害发生方法的；对提供的商品或者服务质量、性能、用途、有效期限等信息作虚假或引人误解宣传的；  （三）宾馆、商场、餐馆、银行、机场、车站、港口、影剧院、景区、娱乐场所等经营场所存在危及消费者人身、财产安全危险的；  （四）以格式条款、通知、声明、店堂告示等方式，作出排除或者限制消费者权利、减轻或者免除经营者责任、加重消费者责任等对消费者不公平、不合理规定的；  （五）其他侵害众多不特定消费者合法权益或者具有危及消费者人身、财产安全危险等损害社会公共利益的行为。  **第三条** 消费民事公益诉讼案件管辖适用《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的解释》第二百八十五条的有关规定。  经最高人民法院批准，高级人民法院可以根据本辖区实际情况，在辖区内确定部分中级人民法院受理第一审消费民事公益诉讼案件。  **第四条** 提起消费民事公益诉讼应当提交下列材料：  （一）符合民事诉讼法第一百二十一条规定的起诉状，并按照被告人数提交副本；  （二）被告的行为侵害众多不特定消费者合法权益或者具有危及消费者人身、财产安全危险等损害社会公共利益的初步证据；  （三）消费者组织就涉诉事项已按照消费者权益保护法第三十七条第四项或者第五项的规定履行公益性职责的证明材料。  **第五条** 人民法院认为原告提出的诉讼请求不足以保护社会公共利益的，可以向其释明变更或者增加停止侵害等诉讼请求。  **第六条** 人民法院受理消费民事公益诉讼案件后，应当公告案件受理情况，并在立案之日起十日内书面告知相关行政主管部门。  **第七条** 人民法院受理消费民事公益诉讼案件后，依法可以提起诉讼的其他机关或者社会组织，可以在一审开庭前向人民法院申请参加诉讼。  人民法院准许参加诉讼的，列为共同原告；逾期申请的，不予准许。  **第八条** 有权提起消费民事公益诉讼的机关或者社会组织，可以依据民事诉讼法第八十一条规定申请保全证据。  **第九条** 人民法院受理消费民事公益诉讼案件后，因同一侵权行为受到损害的消费者申请参加诉讼的，人民法院应当告知其根据民事诉讼法第一百一十九条规定主张权利。  **第十条** 消费民事公益诉讼案件受理后，因同一侵权行为受到损害的消费者请求对其根据民事诉讼法第一百一十九条规定提起的诉讼予以中止，人民法院可以准许。  **第十一条** 消费民事公益诉讼案件审理过程中，被告提出反诉的，人民法院不予受理。  **第十二条** 原告在诉讼中承认对己方不利的事实，人民法院认为损害社会公共利益的，不予确认。  **第十三条** 原告在消费民事公益诉讼案件中，请求被告承担停止侵害、排除妨碍、消除危险、赔礼道歉等民事责任的，人民法院可予支持。  经营者利用格式条款或者通知、声明、店堂告示等，排除或者限制消费者权利、减轻或者免除经营者责任、加重消费者责任，原告认为对消费者不公平、不合理主张无效的，人民法院可予支持。  **第十四条** 消费民事公益诉讼案件裁判生效后，人民法院应当在十日内书面告知相关行政主管部门，并可发出司法建议。  **第十五条** 消费民事公益诉讼案件的裁判发生法律效力后，其他依法具有原告资格的机关或者社会组织就同一侵权行为另行提起消费民事公益诉讼的，人民法院不予受理。  **第十六条** 已为消费民事公益诉讼生效裁判认定的事实，因同一侵权行为受到损害的消费者根据民事诉讼法第一百一十九条规定提起的诉讼，原告、被告均无需举证证明，但当事人对该事实有异议并有相反证据足以推翻的除外。  消费民事公益诉讼生效裁判认定经营者存在不法行为，因同一侵权行为受到损害的消费者根据民事诉讼法第一百一十九条规定提起的诉讼，原告主张适用的，人民法院可予支持，但被告有相反证据足以推翻的除外。被告主张直接适用对其有利认定的，人民法院不予支持，被告仍应承担相应举证证明责任。  **第十七条** 原告为停止侵害、排除妨碍、消除危险采取合理预防、处置措施而发生的费用，请求被告承担的，人民法院可予支持。  **第十八条** 原告及其诉讼代理人对侵权行为进行调查、取证的合理费用、鉴定费用、合理的律师代理费用，人民法院可根据实际情况予以相应支持。  **第十九条** 本解释自2016年5月1日起施行。  本解释施行后人民法院新受理的一审案件，适用本解释。  本解释施行前人民法院已经受理、施行后尚未审结的一审、二审案件，以及本解释施行前已经终审、施行后当事人申请再审或者按照审判监督程序决定再审的案件，不适用本解释。 |